

김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02-101
----------	--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02. 12. .
제 출 자 : 김 제 시 장

1. 개정이유

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 결정시 불합리한 점을 개선 불용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절감에 기여하기 위함.

2. 주요골자

○ 불용 처분 절차의 간소화

- 불용물품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불용 결정후에 활용가능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실시
- 소요조회는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김제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소요조회를 갈음함.

3. 참고사항

○ 관련근거

-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준칙안 시달
(도회계13330-1737, 2002. 8. 19)

김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김제시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물품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, 축산물,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시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결정을 하여야 하며, 활용가능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.

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제3항에 의한 소요조회를 갈음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6조(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) ①물품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는 때와 임산물, 축산물,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시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8.(생략) ②·③ (생략) <신설></p>	<p>제16조(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) ①물품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, 축산물,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시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결정을 하여야 하며, 활용가능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8.(현행과 같음) ②·③ (현행과 같음)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제3항에 의한 소요조회를 갈음할수 있다.</p>